

**남양주시 공고 제2021 - 1001호**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위원회 공적 심의 기한을 명시, 그 밖의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규칙 제명 변경 (안 제명)
  - (현행)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변경)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나. 위원회 공적 심의 요청 기한 명시 (안 제4조)
- 다. 조항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 및 그 밖의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라. 포상금 지급을 위한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 포상금 지급신청서 (안 별지 제1호)
-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별지 제3호)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 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징수과 징수기획팀(☎031-590-8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185-10)

팩 스 : 031-590-2199 / 전자메일 : jingjing@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규칙 제            호

##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을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통상”을 “보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확정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공무원(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이를”을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조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배분받은 공무원에 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포상금지급 신청”을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으로 한다.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공적심의 결과 보고)”를 “(공적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징수과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위원회에 공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이후에 징수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일 또는 부과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2. 그 밖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90일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의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따른다.

제5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의숨”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징 수 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징수과장 김영미
	팀장 직위·성명	징수기획팀장 김미민
	담당자 성명·전화	서혜진 (031-590-8782)

## 부 칙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3조 관련)

구 분	건 수	금 액 (원)			포상금 (원)
		본세	가산금	계	
합 계					
체납액 징수					
징수촉탁					
탈루세액 제보					
은닉재산 신고					
숨은세원 발굴					
창의적 제안, 제도개선 등					
<p>「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align="center">년      월      일</p> <p align="center">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p> <p align="center"><b>남양주시장 귀하</b></p>					
첨 부	<p>1.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 : 체납액 징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포상금 신청 관련 추진자료</p>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제4조 관련)

의 결 일	년 월 일
공 적 분 야	
지급 신청자	
포상금신청액	
의 결 주 문	
포상금의결액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서 명	의 건
		적정	부적정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위원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u></p>	<p><u>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 ----- -----</p>
<p>제2조(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의 확정 및 배분) ①시장은 조례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p>	<p>제2조(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의 확정 및 배분) ①-----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보통----- ----- -----</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공무원(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이를 배분할 수 있다.</p>	<p>②-----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 -----</p>
<p>③조례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p>	<p>③조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2항에</p>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체납액에 한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내역서와 체납액을 징수하기까지의 추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적심의 결과 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의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의한 다.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배분받은 공무원에 한정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  
-----

제4조(공적심의) ① 징수과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위원회에 공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이후에 징수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일 또는 부과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2. 그 밖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90

<p>&lt;신 설&gt;</p> <p>제5조(대장비치) 징수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u>별지 제6호서식</u>의 순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p>	<p>일</p> <p>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의 결과 보고는 <u>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u> 및 <u>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u>에 따른다.</p> <p>제5조(대장비치) ----- ----- ----- <u>별지 제6호서식</u> <u>의 순</u>----- ----- -----.</p>
--	---